

제400회 국회
(정기회)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11월8일(화)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4)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5)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4)
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7)
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7)
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9)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3)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52)
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52)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8)
1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4)
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32)
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5)
1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7)
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8)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9)
17.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19)
18.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6)

상정된 안건

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4) 2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5) 3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4) 6
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7) 7
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7) 7
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9) 10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3) 13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52)	13
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52) ..	13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8)	14
1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4)	17
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32)	18
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5)	18
1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7) ..	20
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8)	20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9)	21
17.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19)	24
18.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6)	24

(14시06분 개의)

○소위원장 김정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8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법안소위가 두 차례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본회의에서는 같은 회기에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2건 이상 의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다음 소위에서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처리될 경우 오늘 의결한 법률안을 국회법 제91조 2항에 따라 변안 의결하여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함께 대안으로 묶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몇몇 위원님들께서 우리 법안 심사를 위해서 지금 정부 측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좀 더 가까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늦게 제안이

되어 가지고 이 위치를 좀 옮기기가 그런데요. 알아보고 다음번에 가능하도록 해 보도록 하고 또는 소회의실을 사용했으면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행정실과 상의해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4)

(14시08분)

○소위원장 김정재 의사일정 제1항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에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별도로 미혼자녀에게도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주거급여와 별도로 미혼자녀에게도 임차료를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이러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은 간단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거주지가 분리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서 이 조문에 대한 수정

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리지급은 조문의 위치를 8조의2보다는 7조의2로 옮기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지급 기준 및 방법 등도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4쪽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문의 위치를 8조의2에서 7조의2로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섭 위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혹시 대상 추계해 봤어요, 여기 해당되는 수급자의 미혼 자녀 19세 이상 30세 미만 예측되는 추계 비용? 기본적으로 동의는 해요.

○소위원장 김정재 동의를 하시는데 지금 답변 주십시오.

○조오섭 위원 궁금해요, 그것을 알고 있는지.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분리지급을 했을 때 금년도 예산이 한 3만 3000명 정도 지금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조오섭 위원 3만 3000명이 얼마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3만 3000명 정도 해서 537억 원.

○소위원장 김정재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저는 이것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내용상에 이견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의가 없는 법안만 다 처리가 되고 양당 간사님들이 합의한 것만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어느 순서에서 어떻게 토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요.

주거급여법 사실 지금 한 오백몇십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OECD 평균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주거급여 대상과 폭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주거급여법을 냈고요.

특히 청년가구 같은 경우에 독립된 청년가구임에도 그 부모가 누구인가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취직이나 또는 학업을 위해서 독립된 청년가구에겐 주거급여를 다 제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한 50만 명 정도가 되고 돈도 좀 듭니다마는 안 되면 조금 단계적으로라도 해서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 안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심상정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 참고하고 또 관련 법안도 상정에 좀 더 많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5)

(14시13분)

○소위원장 김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보고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그리고 입주하는 기업 외에도 대학 및 연구소 등에 대해서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업도시가 자족성을 갖추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새만금사업법 등에서도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감면받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저희들 현재는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감면 대상을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의 수정의견 표입니다.

보시면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여기 ‘등’을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차관,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 ‘등’ 자 빼는 것은 동의하고요.

그런데 연구소라고 그러면 이 개념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대학 그러면 어느 정도 모두가 동의하는 개념이 정의가 되는데 연구소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게 없으면 상당히……

이게 왜냐하면 도시개발 관련된 거거든요. 연구소로 위장이라고 그럴까요, 연구소가 아니면서 연구소의 형태를 취해서 토지를 저렴하게 취득하고 다른 용도로 바꾼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없는지 그런 것 때문에 여쭙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라는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2쪽에 보시면 다른 법에서도, 예를 들면 새만금법에서도 보면 연구기관 이렇게 돼 있고요.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라서도 연구기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들은 타 법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수석전문위원님 혹시 보충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일단 지금 현재 연구소를—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연구기관으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통상적으로는 연구기관을 지칭할 때는 저희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타 입법례를 보면 여러 가지 입법례에서 연구기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냥 앞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저희도 동의합니다.

○김병욱 위원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다음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부장 관련된 경쟁력강화 법률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이 이 앞에 ‘기업, 대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이렇게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병욱 위원 대통령령이라는 게 이 세 가지 법률에 근거한 연구기관 아닌가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아닙니다.

직접 여기서 연구기관을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아예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나열……

○김병욱 위원 하나하나 나열한다고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요건을 명확하게 해서……

○김병욱 위원 아니, 새로운 연구기관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지 R&D에 도움이 되는 연구기관은 장려를 하되 연구 활동을 안 하면서 형식상 연구기관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토지를 이용한 어떤 부의 창출에 관심이 있는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벤처라든지 혁신기업의 연구기관은 허용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 뜻인데, 제 말씀은.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그 경우는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김병욱 위원 기업으로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기업은 해당이 되고요.

현재는 사실 대학 쪽이 더 수요가 많고요. 그리고 연구기관은 여러 입법례에서 연구기관이라 하면 저희들이 국가 출연연구기관법이라든지 이런 쪽의 연구기관을 통상적으로 지칭을 하는데요. 대개 시행령에서도 이 부분을 굳이 어떤 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약간의 포괄적 규정을 더 구체적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그런 구체적 규정을 두기보다는 시행령으로 내려서 나열할 수 있는 것들은 나열하고 그 외에도 연구기관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요건을 정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김수홍 위원님.

○김수홍 위원 수석전문위원 얘기를 들으면 만약에 연구소를 없애고 연구기관으로 하면 그 기업이나 대학이 가지고 있는 출연한 연구소는 여기의 기업, 대학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런데 만약에 기업이나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연구소가 별도의 법인으로 돼 있으면 법에 상충이 될 수 있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좀 더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책연구기관도 포함될 수가 있고 기업부설연구기관도 될 수가 있고. 저희가 시행령을 정할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기업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오섭 위원 3쪽 ‘등’을 제외하고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 수정의견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맞습니다.

○조오섭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대학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새만금 특별법도 그렇고 산업집적활성화법도 그렇고 소부장법도 그렇고 대학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대학은 안 들어가 있고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에서만 특별히 대학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법에 보면 기업하고 연구기관……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정부 측에서 일단 먼저 답을 한번……

○조오섭 위원 예,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대학의 경우에도 저희 기업도시 활성화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도 연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벤처 같은 것도 설립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대학도 넣을 경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오섭 위원 차관님 논리대로라면 새만금 특별법도 마찬가지로, 산업집적활성화법도 마찬가지로, 소부장법도 마찬가지로, 모든 법에 대학을 다 넣는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곳이나 도움되지 않는 것은 없거든요, 땅만 분양받는

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지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 말씀대로 한다면. 그래서 다른 법에는 없는데 갑자기 대학이 끼어들어 있어서, 이 법에만 특별하게 끼어들어 있어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데 답은 아직은 모르겠네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위원님, 일단 현재 충북 과학기술원, 그다음에 고등기술연구원 해서 제가 이게 대학인지, 연구기관으로 봐야 될지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만 현재 이 법 개정 수요가 이런 쪽에서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대학이라는 명칭을 입법적으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조오섭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수요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이 법에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만 대학을 넣게 되면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게 우려가 되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장철민 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찾아보니까 조특법상 연구기관에 고등교육법상 대학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특법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세제 혜택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연구기관의 고등교육법상 기관들,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 등등 해서 이미 대통령령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실제로는 조특법상 연구기관에 준해 가지고 적용하면 다 일률적으로 될 것 같은데요?

○조오섭 위원 그러면 대학을 넣을 필요가 없지요.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굳이 대학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조특법상 연구기관에 준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렇게 범위에 오해는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세제 및 자금 지원이니까……

○소위원장 김정재 의견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저희는 이종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법안이라서 의원님의 발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대학도 필요하면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타 입법례 등을 봐서 대학을 굳이 넣지 않더라도 대학과 관련되는 그 기관들에 대해서 이러한 임대료상의 특례를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삭제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여기 지금 대학과 연구기관을 넣자는 게 이 법의 취지인데 위원님들 말씀으로는 이게 조특법상에도 지금 충분히 감면을 받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였는데요.

○장철민 위원 연구기관이라는 범위가 조특법에 있는 걸 그냥 갖다 써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소위원장 김정재 충분하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논의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으신 것 같은데…… 의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오늘 끝나기 전에 한 번만 다시 더 정리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정리하기 전예요 그것 한번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특별법이잖아요. 특별법이라 하면 다른 일반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학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학 관련된 인원이라든지 학과 신설이라든지 제한이 많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이게 이 안에 대학이 들어가고 특별법 안에 이런 혜택을 주게 되면 기존의 대학 관련된 법률과의 충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된 자료가 있어야만이 여기에 대학을 넣느냐 안 넣느냐를 저희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도 함께 주시고, 그걸 오늘 중에 자료를 못 주시면 다음에 심의하더라도 대학 관련된 규제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은. 그런데 그것을 다 넘어서서 이 특별법에 적용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야만이 대학을 넣느냐 안 넣느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대학을 설치하거나 학교를 설치하는 것은 이미 고등교육법이나 법률에 따라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기업도시 특별법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말하는 특례를 주냐 안 주냐의 문제만……

○김병욱 위원 기존에 설립된 대학의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이전을 하든 새롭게 설립을 하든……

○김병욱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법에다가 분명히 써야지. 그것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기 때

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제가 그것도 한번 다시……

○김병욱 위원 대학하고 연구기관의 개념 정의와 그 형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술하지 않으면 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이따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예, 오늘 정회를 하기는 해야겠네요. 지금 정회 때까지, 오늘 회의 종료하기 전까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의결은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4)

(14시28분)

○소위원장 김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설명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주거약자용 주택에 포함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경우에 그 법정형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상이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동일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임대받는 자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의 유사 규정과의 형량을 맞춰서 법률 간의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7)

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7)

(14시30분)

○소위원장 김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2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1쪽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에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횡령·편취당한 경우에도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등록을 말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유사 입법례로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자동차를 도난·횡령·편취당한 경우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입니다.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은 건설기계 폐기 요청을 할 때 제출하는 본인 확인 서류가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현재 법은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 확인 방법을 인감증명서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확인 방법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원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서 처리된 건설기계 관련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건설기계의 등록·등록말소·검사, 건설기계 사업의 등록 등이 전산정보 처리 행위입니다. 이러한 건설기계의 등록 등과 관련된 정보처리 업무는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러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 그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전산자료도 이러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료와 유사하므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0쪽입니다.

이건 부칙입니다. 부칙에 대해서는 수정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말소 요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횡령·편취를 추가하는 것과 본인 확인 서류로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를 추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사항이므로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산자료 제공에 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6개월의 준비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11쪽에 이와 관련해서 부칙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유경준 위원님.

○유경준 위원 두 번째, 건설기계 폐기 요청안에 본인 확인 서류 대신에 인감증명서 외에 ‘또는’으로 돼 있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한데 지금 수많은 거래나 수많은 것들을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만 특별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간편하게 해 주겠다는 건지, 그런 의도 같은데 그러면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확인증명서가 대체 가능하다고 보면 여기만 특별히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확인서를 이렇게 해 줘야 할 이유가 뭔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지금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법이 제정이 되면서 인감증명에 갈음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유경준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것 말고 모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데는 복잡한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인감증명서 없이도 본인서명사실확인에 관한 증명서가 있으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러면 다 바꾸시지요. 다 바꾸시지 굳이 이것만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점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본인 확인하는 데 있어서 엄격성이나 앞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인감증명서에 비해서 전혀 하자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위원님,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요, 현재 입법화되어 있는 것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특별법에 현재와 동일한 체계로 일단 한번 입법화되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입법화되게 되면 이게 본법에 들어가는 입법화 과정에 두 번째 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등 이렇게 시행령에서 일단 많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산출연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도 궁금해서 그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발급받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것을 하려면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직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확인서를 작성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마 위조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경준 위원 인감증명서하고 개인 입장에서 발급 절차나 이게 어떤 게 더 복잡해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이것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직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인감증명서도 가서 유사한 방법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입법 수요가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가늠이 안 돼서 그래요. 인감증명서가 그냥 가서 떼는 절차나 또 관할 관공서장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건데 어떤 수요 때문에 이게 입법이 온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는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서 인감을 등록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증명을 떼야 되는데 도장의 분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새로 발급받아야 되고 하는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저도 궁금해서, 같은 맥락인데요. 인감도장은 제가 워낙 인감도장 분실을 잘 해서 인감증명서 받으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분실신고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가 사인만 한 번 하면 되고, 최초 사인을 한 번 하면 지자체 단체장이 직인을 찍으면 어떤 정부기관에, 어떤 공공기관에 가서도 내 사인이 그것과 동일하면 그게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소위원장 김정재 그래서 사인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같은 필체로. 맞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저도 제가 이렇게 사인을 하면 그 사인이 이전 사인하고 동일한지만 확인되면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던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알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심상정 위원 한 가지 답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인감 쓰는 모든 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것만 하나고.

○소위원장 김정재 저도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 리모델링 특별법에는 이런 법안이 입법화가 돼 있는데, 이게 두 번째 케이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러냐 하면 다른 것들은 주로 시행령에 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통상 우리가 어떤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으로 위임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유경준 위원님 질의한 것에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일단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사실 도장 대신 서명을 받는다는 것 외에는 절차적으로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명의 동일성만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동일성을 인정해 주면 그것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런 행정절차의 특별한 권리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면 인감증명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당분간은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행정절차적으로 본인 서명만 되면 되는 것들은 행정절차의 간편화라든지 국민 편의를 위해서 점점 더 확대해 나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재산 거래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도입한다는 것은 아직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이런 행정절차로서 본인을 증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점 더 국민 편의를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답변이 되셨는지……

○유경준 위원 하여튼 다 이해는 안 돼요.

제 질문은 궁극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을 모든 경우에 대체할 수 있냐 이 질문이 하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것은 이 부분만이 아니고……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선을 긋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는 2개를 다 허용하고 어디까지는 하나만 인감증명을 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답이 안 나와요. 계속 입법 심의할 때마다 이것 가지고 이것은 가능하나 안 가능하나, 앞으로 어떨 거냐 이런 일들이 생길 것 같아서 질문드리고.

바라건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을 다 대체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라고 하지만 결국 그럴 것 같지도 않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동사무소 직원이 아차 실수해서 이 경우에도 잘못 건네주면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문제지요.

○소위원장 김정재 그러면 유경준 위원님께서도 이 법안에서는 일단 보류를……

○유경준 위원 이 2개에 대해서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앞으로 계속 이 제도가 유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이게 아마 건설기계를 폐기하는 요청 시에 인감증명서 외에 자기 서명한 사실확인서를 추가하자,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유경준 위원님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 줄 어떤 답변이 있으신지요?

○유경준 위원 그냥 한 번만 더……

○소위원장 김정재 보류하고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유경준 위원 크게 반대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할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종식 위원 본인 거라고 확인만 하면 되지 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유경준 위원 법이 복잡해서요.

○소위원장 김정재 그러면 이것도 아까 2항과 마찬가지로 잠시 보류했다가 유경준 위원님한테 설명 좀 하시고 이래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9)

(14시45분)

○소위원장 김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해서 양도나 합병이 신고된 때가 아닌 해당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신고에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가 있고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간단하게 신고만 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신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심의해야 되겠고, 즉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봐야 되면 저희들이 통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습니다.

2쪽의 세 번째 문단입니다.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신고행위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가 어렵고 결국 양수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 확인 등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양도·합병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서 심사를 거쳐 수리행위가 필요하므로 이런 승계 시점을 해당 신고할 때가 아닌 수리된 때로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입법례와 같이 신고를 받는 경우에 그 내용을 검토해서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의 충분한 확인 등을 위해서 신고 수리 간주제는 여기에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5쪽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4항을 추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께서도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 하나 좀 여쭙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예, 김병욱 위원님.

○김병욱 위원 이게 기업의 합병 또는 양도 같은 경우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법인격이 달라지는 건데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고 수리 이후에 다른 행정절차가 있을 수도 있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신고 수리가 되면 양도가 된 것으로……

○김병욱 위원 새로운 법인격을 획득하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김병욱 위원 그렇게 해석되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양도는 당사자 간에, 양수자와 양도자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고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사실을 신고해서 수리가 되면 거기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 과거에 신고만 하게끔 돼 있었던 말입니까? 그런 중요한, 새로운 법인격이 탄생하는 법적·행정적 절차인데 과거 법이 수리라는 절차 없이 신고만 해도 그런 새로운 법인격이 만들어지는…… 좀 허술하게 느껴지거든요, 과거 법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 신고, 신고 수리 또 다른 행정절차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요. 제가 법을 다 보지를 못해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과거에도 신고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신고의 수리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병욱 위원 그런데 신고 수리가 되면 그 이후에 행정절차는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없습니다.

○김병욱 위원 확실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김병욱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직원들 한번 여쭙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수리를 하게 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냥 형식적인 것만 있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어차피 신고 수리에 따른 행위고요.

○**김병욱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꼼꼼히 보고 이런 중요한 인수합병이라든지 영업 양도·양수 경우에 신고뿐만 아니라 수리라는 절차까지 추가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과거에 이렇게 허술하게 돼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조금 이따가 또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법률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를 해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적으로는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법에 이런 부분들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넣는 규정입니다.

○**김병욱 위원** 그렇겠지요. 과거에 법문에는 신고만 돼 있고 시행령이나 또는 지침에는 사실 수리에 준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 이 말씀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것을 법문으로 올려서 신고 수리라는 행정적 절차를 넣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수리라는 것을 좀 더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김병욱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김수홍 위원님.

○**김수홍 위원**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냈는데 그건 행정관청이 신고 수리를 해태하거나 고의로 지연할 경우를 대비해서 성실하게 신고수리 업무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수정의견을 낸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두 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청이 신고 수리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이것은 반드시 신고 수리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김수홍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수리 여부를 법적 절차에 따라서 행정관청이 공무원의 의

무로 법적 검토를 해서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말을 여기에 넣는 게…… 저는 수리 접수하고 나서 며칠 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면 그 기간은 모르겠는데 당연히 해야 될 공무원의 의무를 여기에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모든 행정사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심을 받게 해서 한번 여쭙본 건데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이게 여러 가지 입법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 여부를 수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하나의 입법례가 있고요. 두 번째 입법례는 ‘7일 동안 신고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신고 간주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입법례는 신고 간주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겠다는 것이 이 법 수정의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욱 위원** 간주제를 도입하는 경우는 기간이 있겠지요. 며칠 지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간주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과거에는 신고만 해서…… 물론 차관님 말씀은 법문에는 신고라는 단어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리에 준하는 절차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신고 수리를 도입하면서 간주제가 도입 안 되면 약간 뭐랄까 신고한 사람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공무원의 수리 여부만 목을 매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공직자는 그것 때문에 일을 좀 늦게 처리하거나 해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당연히 기간과 간주제는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오섭 위원** 저도 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안 정해지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고만 돼 있어서, 이것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없어서 한참……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여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한다든가 아니면 간주제로 7일 이내에 수리하지 않으면 간주한다라고 한다든가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야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장철민 위원** 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당연히 기속행위라서 사실은 수정의견이 약간 불필요한 조문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솔직히 수리를 요한

신고 중에 기속행위가 아닌 경우가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그래서 이걸 불필요한 조항 같고.

실제로 지금 이게 입법 자체에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원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바꾸는 게 아니고 원래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데 효력 발생 기산점 이슈가 복잡하니까 효력 발생이 신고 때냐 수리 때냐 이것만 명확하게 하는 입법인 거잖아요. 그런데 수리했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효력 발생 시점으로 본다는 거라서, 저는 사실은 수정의견 필요 없이 그냥 원안 그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법을 괜히 복잡하게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세 가지 입법이 다 가능합니다. 지금 수정의견이 필요 없는 입법이 있고요. 수정의견을 넣는 입법이 있고, 수리 간주제까지 도입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두 단계까지를 도입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원안대로 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장철민 위원 이것 양도 합병 관련해서 간주제를 도입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요. 당연히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심사가 있는 다음에 수리 행위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간주제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장철민 위원 간주제에 대해서는 토론할 여지가 별로 없고 그냥 원안대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그러면 위원님들, 원안대로 하셔도 괜찮으면, 저희들이 사실 김수홍 위원님 지적도 100%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경준 위원 잠깐만, 아까 민주당 위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수리가 언제 됐냐 보는 것은 어떻게 원안대로 가면, 개정안대로 가면……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대로.

○유경준 위원 개정안대로 가면 그러면 수리는 언제 됐다고 봐야 됩니까?

○장철민 위원 수리가 됐을 때 수리가 된 걸로 보는 거지요.

○유경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리 기한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김정재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사실 이게 합병이나 양도가 언제 이게 효력을 발생하느냐?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게 시행규칙 안에서는 이런이런 절차를 밟아서 결국은 수리한 때로 보는데 이 법률안에 보면 정확하게 ‘수리’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효력 발생 시점을 수리한 때로 본다’라고 했는데, 하나 더 수정안을 넣는데 그러면 수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장철민 위원님은 이번 이 법안의 취지와는 무관하므로 굳이 개정안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출한 개정법률안대로 가면 어떻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유경준 위원 아니, 개정안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소위원장 김정재 아, 개정안도?

○유경준 위원 그러면 개정안에서 수리가 언제 된 걸로 보느냐 하는 데 대해서 법률적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수리됐냐, 신고를……

○소위원장 김정재 그러니까 수리에 관한 것은 언제 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이 법의 모든 조건들이 적합하면, 밑에 시행규칙이나 다른 것들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시행규칙에 보면 10일 이내에 이것을……

○소위원장 김정재 그러니까 날짜가 다 명기가 돼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10일 이내에 저희가 심사해서 적합하면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차관님, 그런 구체적 내용들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제때제때 설명을 더 빨리해 주시면 저희가 갑론을박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일 이내에 이렇게 검토하고 수리하도록끔 다 절차가 돼 있다고 하니까 굳이 지금 장철민 위원님의 의견처럼 수정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낸 대로 하시는지……

○유경준 위원 아니, 일단은 필요 없는데 수석전문위원 이야기도 한번 더 들어봐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정재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위원님, 일단 여러 가지 입법례 중에 저희들이 선택한 것은 이 4항의 수정의견을 낸 것이고요. 입법의 실체라든지 그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개정안대로 가도 되고요. 4항이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조오섭 위원 차관님,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10일 이내에 수리해야 된다고 돼 있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처리기간 10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당연히 그게 되어 있지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굳이 수정안이 필요 없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033)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152)

(14시59분)

○소위원장 김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설명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성립된 협의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이 조문이 준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준용 조문의 오류를 시정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현재 준용대상 규정 중에 제53조제4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소집 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협의 성립의 확인과 직접 관련이 없

습니다. 이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제53조제5항으로 정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합니다.

이것은 2012년 6월 법률 개정에 따라 종전의 제53조제4항이 5항으로 이동한 것인데 이를 준용 규정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대해서는 입법 미비의 조속한 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오섭 위원 동의합니다. 다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8항 이상 2건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52)

(15시02분)

○소위원장 김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개발협회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회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재적 성격의 행정행위가 법률에 직접 근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도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8)

○소위원장 김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일단 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용적률 완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그 토지가치의 상승분을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제공하는 공공기여 제도에 대해서 기존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또는 주요 광역시의 경우 시가화지역 대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비율이 대부분 높은 상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만 공공기여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법상으로는 이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기존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공기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은 범위 확대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공기여의 범위를 포함하도

록 할 경우 공공기여의 광역화 제도에도 개정 조문이 적용되어서 공공기여 광역화를 폭넓게 활용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여의 요건을 당초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몇 가지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다음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6쪽을 보시면 개정안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 역시 이것은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 수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 부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의 광역화에 따라서 시행일과 적용례, 특례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부칙 2조는 변경에 대한 사항도 공공기여에 포함됨에 따라 그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조제목은 본문의 내용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52조의2 개정사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이므로 본문의 내용은 ‘변경’만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부칙 제3조는 공공기여의 광역화 제도 도입 이전에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해서 이미 공공기여 규모 및 대상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에 변경하는 경우에도 예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10쪽에는 간단히 제2조의 조제목과 간단한 체계 자구를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유경준 위원님.

○유경준 위원 이게 쟁점이 없는 법률안을 오늘 심의한다고 그래서 쟁점이 없는 줄 알고 봤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법안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2020년 12월에 통과한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국토계획법, 12월에 통과됐는데 거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의 고려사항으로 있던 것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강제성을 부여하고 시행령에 있던 조항들이 삭제돼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칙에는 처음 적용 시점이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최초가 아니고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돼 가지고 그 법을 일부 수정하려는 거로 입법 취지는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게만 해주면 되는 거지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뿐만이 아니고, 여기만 적용됐던 법을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데도 적용하겠다 하는 것은 이건 소급입법이고 기존에 잘못된 입법을 가리기 위한 과잉 입법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입법 취지에 맞게 입법 미비된 게 있으면, 변경하는 경우를 적용하면 그 변경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공공기여분을 기존 계획에서는 안 돼 있던 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과하겠다는 것은 소급입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 나는.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김희국 위원님.

○金熙國 위원 법안 내용은 지금 유경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과 좀 다르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부담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변경을 해서 더 큰 이익을 받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도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 부담 시점이 그 전에 이미 합의를 다해 가지고 부담까지 결정이 됐는데 추후에 변경했다고 해서 그걸 소급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내용상 문제가 없습니다.

○유경준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반대를 하

겠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그런데, 김희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변경하는 경우에 공공기여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소급입법이지요, 이것은.

○소위원장 김정재 다 아시다시피 법률안 심사는, 사실상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칸막이를 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자유롭게 위원님들이 또 이쪽의 더 전문가께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잘 못 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서로 편안하게 의견을 주고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차관님이나 아니면 수석전문위원께 답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명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경준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김희국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편히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편히 말씀하십시오.

○조오섭 위원 이 부분을 소급으로 보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됐어요. 되고 나서 그 뒤에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이익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의 변경이기 때문에 소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개정안 자체가 그냥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유경준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기존에는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만 적용되게 잘못된 입법례가 돼서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봐요. 변경하는 경우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처음에 공공기여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담하는 게 없지만 과거에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부담을 안 했던 것을 변경만 하거나 하면 부과시키겠다는 식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이라고 보입니다.

○조오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변경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익이 안 나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이 계획을 용도를 변경을 시켜줘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익이……

○유경준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 그건 알고 있는데 처음에 수립할 당시에 공공기여가 없던

경우를 일부를 변경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부과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처음의 입법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허종식 위원** 위원님, 그러니까 그렇게 이익이 안 나는 경우 문제가 없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공기여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인 거라고 저는 받아들여 지는데요.

○**유경준 위원** 과거의 공공기여분에 대해서,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했던 것들은 공공기여분에 대해서 적용을 안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허종식 위원** 변경 안 받았지요.

○**유경준 위원** 처음에 2012년에 천준호 의원이 하고 난 뒤에 공공기여분에 대해서 자기 구만 말고 다른 구에도 기여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 그런데 2012년 12월 이전에 정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종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복잡해지고.

○**유경준 위원** 복잡한 게 아니라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적용을 안 하던 것을 다시 바꾼다고 적용한다는 것은 소급적용이지요.

○**조오섭 위원** 아니, 2012년 이전에 했던 것은 신규 지정할 때에 반영이 됐던 거고 그것이 계속 오다가 그 뒤에 새롭게 변경을 해서 수익이 더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지요,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그래서 김희국 위원님 말씀이 저는……

○**장철민 위원** 그런데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건 기존에, 제가 이 52조의2를 문리 해석만 하면 여기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안 한다는 게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거든요. 52조의2만 보면 그냥 변경도 당연히 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

○**조오섭 위원** 현행법에?

○**장철민 위원** 예.

○**유경준 위원** 그러면 52조의2를 그냥 두면 됩니다.

○**장철민 위원** 제가 보기에선 그러니까 52조의2 내용을 앞뒤로 해석을 해 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세우든 변경을 하든 어쨌든 용적률 변화가 있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거나 하는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공공기여도 적용이 됐어야 맞

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행정을 잘못하셨던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여기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렇게 돼 있고요. 부칙에 보면 이 지정을 ‘최초로 신규 지정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부칙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규정만 가지고는 기존에 있었던 걸 새로이, 지구단위계획에 없던 지역을 새로이 지정되는 것만 적용이 되는 거고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돼 있다가 변경이 돼서 한 부분들은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공기여의 대상이라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이나 변경됨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또 올라가서 기관이나 시설의 이전지 개발이라든지 복합용도 개발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등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공공기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이렇게 공공기여 대상이 아니던 사업들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해서 공공기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히 용적률이 올라가서 지가 상승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에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변경이라는 부분들을 이번에 개정안에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저는 좀 이해가 됐는데 유경준 위원님은 이게……

○**유경준 위원** 저는 뭐 사실 이것은 소급입법이 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던 것을 변경한다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추가로 공공기여분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계획 변경이 없이 그냥 하던 대로만 해라 이렇게 강제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허종식 위원** 유경준 위원님이 반대의견이 많으시니까 이 부분은 유경준 위원님하고 정부랑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지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그렇게 하지요.

지금 유경준 위원님께서서는 이걸 소급으로 보시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도 새롭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 새롭게 생기는 것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 같은데 지금 유경준 위원님께서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니까……

어찌 되었든 저희 상임위 법안소위는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어차피 그것 다 처리해야 본회의에 올리고, 시간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의견을 내시고 또 충분히 납득하시고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조금 더 하시다가 4시쯤 정회를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조오섭 위원 4시에는 끝내지요.

○소위원장 김정재 그러니까 저는 오늘 최대한 빨리 하고 아까 그 의결, 2항하고 4·5항 때문에 한 5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4) (15시18분)

○소위원장 김정재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일단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예정지역 주민들의 재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건설청장이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현행법에 건설청장이 예정지역 주민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또 시행령에서도 분묘 이장 등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또 자녀에 대한 고용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건설청장이 예정지역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건설청장의 업무에 지원대책 수립을 별도로 규정할 개정안의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주민지원 대책 수립·시행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일단 건설사업은 점차 완성단계로 접어들면서 주민단체 수행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어 건설청과 사업시행자의 노력만으로 원주민의 재정착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어렵습니다. 또 건설한 시설물 등이 세종시에 단계적으로 이관되어서 주민단체 위탁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주민지원 대책 수립·시행 의무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것은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개정안의 의견 조희 및 실무협의 결과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7쪽의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개정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설청장의 업무 8의2, 이 부분은 이미 다른 규정에 있으므로 삭제하도록 하고요.

제54조제3항에 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업무에 추가하도록 하는 것은 개정안과 같이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32)

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5)

(15시22분)

○소위원장 김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사항에서는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셨지만 조세특례의 효과, 즉 양도세 과세이연의 효과가 수정의견이나 개정안에 따라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3쪽의 관련 부처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득세법의 적용에 있어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개정될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되는 건축물이 과세이연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가져왔습니다.

6쪽에 개정안이 있고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요. 40조의10은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이 부분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도시개발법 40조에 따른 환지는 관리처분에 따른 환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적용이 가능하지만 현물보상은 양도 시점과 실제로 새로운 건물을 받는 시점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 조문상 이렇게 차별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다만 정부 측으로서는 개정안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이 부분까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金熙國 위원 지난번 논의가 됐을 때 정리가 덜 됐는데 5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 관련된 법의 가장 모범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구 안에 있는 개인의 소유물, 즉 토지나 건축물을 공공사업개발자가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부분 현물 보상해 버립니다, 협의나 아니면 수용을 하고. 두 번째는 맨 왼쪽에 있는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경우에 환지 방식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나는 현금 보상은 싫다. 나중에 땅으로 대토를 해 주든지 건물로 다오’ 이게 환지 방식이고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이 문제는 택지조성사업인데 여기 이 법에는 기본적으로 도시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지 방식에 대한 사전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유혜령 과장님, 지금 도시정비법의 경우에는 작년엔 25건의 사업이 있었고 그중에 15건 정도가 환지 방식을 채택했지만 이번에 논의할 공공주택 특별법은 아직 한 번도 지구 지정이 안 됐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지요?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유혜령 지구 지정은 돼 있는데 아직 사업계획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 부과 시점은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金熙國 위원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조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 법률이나 도시개발법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건지를 고민을 하다가 지금 3페이지를 봐 주시면 소득세법 제88조(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로 보는 것, 양도로 안 보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특별법에서 정해 줘야 되는 것은 양도로 안 보는 것만 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환지 방식은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이 다 끝나고 공고가 돼야만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양도로 안 본다는 조항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수정안보다는 당초 정부안대로 하더라도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검토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철민 위원 저도 김희국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사실은 수정의견이 더 어색해 보입니다.

실제로 논리적으로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봐주는 거라서 개정안으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허종식 위원** 간결하게 개정안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정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논의가 된 거지요?

지금 수정의견 말고 개정안으로 하자는 데 일단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신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나 정비구역,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해당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9쪽, 검토보고입니다.

공공주택사업 또는 정비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나마 매각 또는 교환을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현재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미약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개정안과 같이 공공매입임대주택 추가 공급계획과 매각 및 교환 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매각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 후 사업 주체 등이 소유하거나 건축한 주택을 이전받는 것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할 실익은 없어서 법문을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지가 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표현을 ‘지구·구역 및 사업에 포함된 경우’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의 개정 사항은 이러한 사항을 반영한 체계·자구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허종식 위원** 이것은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철거돼 있는데 매입임대주택이라고 5년이 안 됐다고, 거기 사람이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남겨 놓고 5년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전국에 너무 많아서 이것은 공포도 6개월인데 너무 길어요. 주민들 속 터져 죽을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당겨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런 경우 많이 봤는데 이것은 타당한 입법인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아직 설명할 게 더……

○**소위원장 김정재** 하나 더 남아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제가 13쪽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환지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고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50조의2의 개정 규정은 허종식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6개월로 저희들이 준비 기간을 정했는데……

○**허종식 위원** 3개월 해도 충분하합니다. 다 확인해 봤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당겨서 3개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그러면 3개월로 수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예, 3개월로 하시고.

이것은 어차피 장관이 충분히 검토를 하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맹점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그리고 하나 더 적용례와 관련해서요. 아까 환지 간주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현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구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서 혜택의 폭을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50조의2의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포함된 여러 가지 공공매입임대주택도 이런 절차를 거치면, 모든 절차를 이 법에 따라 거치면 매각할 수 있도록 경과에 적용례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4쪽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아까 1조에 보시면 공포 후 3개월로 이 부분만 수정하고 제2조와 제3조에 적용례를 이대로 수정의견대로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7)

(15시34분)

○소위원장 김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 도시개발법 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간주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생략하고요.

5쪽,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개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아까 의결을 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개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입니다. 환지 간주를 통해 과세이연 혜택을 조속히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환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적용례를 뒤서 이 법 시행 이전 토지등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7쪽의 수정의견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부칙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8)

(15시36분)

○소위원장 김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1쪽입니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이나 경비원 등 근로자의 취업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 등 채용비리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소위에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소위에서 완전히 정리가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법률의 적용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사정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요.

5쪽에 보시면 53조에 개정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과 같이 해서 개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9의2 이 부분도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6쪽에 보시면 7항이 있습니다. 먼저 7항도 삭제하고요. 이것은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중복된 규정을 다 삭제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와 현행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의 채용을 포함한다고 해서 근로자 채용을 포함한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기존 조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벌칙 규정도 이미 현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9)

(15시38분)

○소위원장 김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설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시설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현재는 체납기간에 상관없이 하루만 지나도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체납이 발생하면 발생한 순간에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로 일단 경감하되 여기에 체납 기

간과 이자율을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쪽, 검토보고입니다.

연체 기간에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하는 등 납부 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연체금 부과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연체금의 일할계산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정감방안을 의결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동일한 취지의 법률안 5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건은 이미 의결되었고요, 현재 이 법의 개정안을 포함해서 3건이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님들께 한번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 소위원회에서의 기본적인 방침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 기간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방식이나 연체금의 상한 등에 관하여는 부담금의 성격 그다음에 연체금 부과 방식에 따른 국민의 부담 수준 그리고 납부자의 의무 이행 확보 가능성 그리고 기본법에서 정한 가산금의 상한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체금의 부과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2건은 지난 9월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항입니다.

현재는 일단 가산금이 고정 3%는 무조건 발생하고요. 그리고 일할계산 없이 가산금 상한이 3%입니다. 그러니까 가산금은 하루만 연체돼도 계속 3%로 발생되고 끝까지 3%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일단 연체가 발생하면 1%는 고정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가산하되, 최고의 가산금 상한은 최대 3%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쪽 보시면 맨 마지막에 대도시권과 도시교통정비법 이 두 가지는 이미 저희들이 의결한 바 있는데 현재가 고정 3%에서 고정 1% 그리고 일할계산입니다. 그리고 총액은 3%까지입니다. 현재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의결된 다른 부담과 동일한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토부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은 아직까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종 수정의견은 11쪽에 있습니다. 11쪽의 수정의견은 일단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가 발생하는 순간에 1%의 가산금이 부과되고요. 그다음에는 기간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서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산하고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최고의 가산금 상한은 100분의 3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의견으로 현재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만들어서 수정안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전문위원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10월 27일날 본회의 가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것은 3%로 해 가지고 통과했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지금 현재 우리 수정의견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최종 상한 3%, 중간에 일할계산 이렇게……

○서범수 위원 이걸로 통과했다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여기 맞춰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조오섭 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소위원장 김정재 예, 조오섭 위원님.

○조오섭 위원 시간을 너무 뺏어 죄송합니다.

최고이율을, 지금 최고 상한이 3%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현재 3%입니다.

○조오섭 위원 그런데 다른 법률, 다른 것의 부담금도 연체가 최고가 3%인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거의 3%로 돼 있습니다.

○조오섭 위원 그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거기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담금이나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부담금, 지금 이 시설부담금은 거의 3%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오섭 위원 아니, 8쪽에 농지보전부담금 개선이 100분의 20으로 써져 있어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저희 국토부 소관은 이 유사한 부담금은 거의 3%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위원님, 일단 여러 부담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각 법률마다 상한은 다 다릅니다. 3%도 있고 10%도 있고, 지금 현재 보시면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익환수 부담금은 현재 상한이 30%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개정안을 한번 또 논의하실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결한 부분도 있고 해서 먼저 의결을 하고요. 나중에 한번 그것은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

○허종식 위원 따로 설명해 주세요, 따로.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 차관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면 시설부담금 장기 체납률이 많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지금 가산 부과한 실적이 현재까지 2건이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김민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걸 1%로 했을 때 장기 체납자들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마는 현재까지 가산금 부과한 게 2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민철 위원 이게 2건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1%로 함으로써 장기 체납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나 이 말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런데 장기간 가면 현재처럼 상한까지, 3%까지 물리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위원** 나중에 저 이것 확인할 겁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이걸 아마 단기 연체자들의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한 법률안 같은데요.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법률안 심사 중입니다만 의결을 보류한 안건의 정리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했다가 4시에 속개할까요? 속개를 언제쯤 할까요?

○**조오섭 위원** 그냥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정재** 한 5분 정도, 아까 잠시 의결 보류한 것, 우리 유경준 위원님 얘기 잠깐만 들을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한 5분만 있다가 3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정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수정의견 마련 등을 위하여 심사를 보류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그리고 제4항 및 제5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2항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보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저희들이 지금 별지로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보시면 대학에 대한 임대료 감면에 관해서는 우리 소관 법인 혁신도시법에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해서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업도시 특별법에 대학을 넣을 것이냐의 여부는 순수히 우리 소위원회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통상 대학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등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이렇게 죽 나열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법 시행령에서는 제32조를 보시면 연구기관을 또 이렇게 시행령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학의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은 현재 당장의 필요성보다는 미래에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혁신도시법과 마찬가지로 기업도시법에도 좀 포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저희는 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이 현재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대학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학의 경우에는 특히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들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스타트업들도 그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특히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만약에 잘 위치가 되면 그런 파생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대학도 여기에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 그것 하나 여쭙볼게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라는 게 민간이 주도해서 도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이 특별법에 의거해서 기업도시 개발이 된 게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현재 6개입니다.

○**김병욱 위원** 6개.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6개인데 지식기반형이 충주, 원주 2개고요. 그다음에 관광레저형이 4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로 지식기반형이 충주하고 원주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욱 위원** 충주하고 원주가 이 법의 대상이 될 것 같나?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금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수정해서

하는 의견에 이의가 없으시고 동의하신다는 말씀 이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위원장님, 아까 ‘기업, 대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소위원장 김정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의사일정 제2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보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아까 보류사항은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미리 자료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입 취지는 인감증명서의 위조 가능성이나 인감도장 분실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2012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발급 절차는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대리인도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또 방문해서 지문날인을 해서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에 발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대리하는 것이 불가하고 또 본인이 발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진위 여부를 관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안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모든 증명 절차에서 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적용하고 있지만 현재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법령에 이것을 계속 적

용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법적 효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동일하고 그리고 민원 불편 해소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게 유경준 위원님이신데……

○유경준 위원 문제 제기가 아니고 설명을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

○소위원장 김정재 글썄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관님께서 아까 이런 자료를 주시고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4시 전에 끝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유경준 위원 반대로 이야기하면 입법할 필요가 없는 것을 입법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을……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했었으면 빨리 끝났을 문제고 이의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문제없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소위원장 김정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두 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19)

18.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6)

(16시07분)

○소위원장 김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8항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을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전체적

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두 건의 제정법안입니다.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정안은 두 건이 발의되었고요. 2021년 12월 29일에 공청회 개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친환경 미래에너지인 수소를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수소도시 건설·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에 대한 규제특례를 마련하며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제정안은 수소도시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수소도시계획 수립, 인허가 및 특례,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기본적인 체계는 동일하지만 홍기원 의원안에 수소도시 건설기준 마련, 수소도시 건설 전담기관 및 육성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쪽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안의 체계를 보시면 두 법안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밑줄 친 부분만 추가적인 조문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쪽입니다.

공청회 주요 내용도 외부 위원들 말씀만 요약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도시에너지 수요를 대응할 도시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민간 주도 수소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도시법 제정이 필요하며 국가적 지원 그다음에 건설·운영 단계 재정 지원 그리고 기반시설 귀속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수소도시의 정책 실현,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자체의 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 국민 참여를 위한 기반 마련 및 합리적 지원을 위해 수소도시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시 내에서 생산, 운송, 이송·저장 등 수소 활용을 촉진하고 수소 인프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5쪽부터는 이제 개별 조문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여기 총괄까지만 설명드리고 국토부 의견……

○소위원장 김정재 거기까지 설명 주시면 전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수소는 미래의 친환경 핵심적인 에너지원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경제위원회 등 정부에서는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도시법은 이러한 수소의 생산이라든지 또 이동 또는 활용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도시 기반이라든지 계획을 통해서 우리 도시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을 정부에서도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 발의의 취지를 감안해서 수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金熙國 위원 우리 인류는 메소포타미아 유역의 수메르 문명부터 5000년 넘게 도시를 만들고 도시에 살고 도시의 생로병사를 겪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정책은 1960년대 산업도시를 만들면서 시작됐고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새로운 도시 콘셉트가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논의했던 혁신도시, 기업도시였습니다.

도대체 혁신도시란 뭐냐, 수많은 논란을 겪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도시계획을 입안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만들어져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엄청나게 좋은 말이었지요. 그 당시에 제가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도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콘셉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는 결코 수소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수소에너지를 도시 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사용할까에 관한 법일 뿐이지 수소도시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시는 전문기술과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게 도시지 수소로 이루어지는 게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더 살펴보고, 이 법안을 논의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도시란 무엇인가’라는 기본서부터 읽어 보고 법안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주십시오.

○조오섭 위원 다음에 논의하지지요.

○허종식 위원 공부 좀 한 다음에.

○소위원장 김정재 오늘 법안 내용이 제정법이 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도시 공부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철민 위원 참고 삼아 제안인데요.

○소위원장 김정재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 위원 제가 앉아 가지고 쪽 한번 다 봤는데 이 검토의견서가 두껍기만 하지 중간에, 예를 들면 계획을 실시계획, 계획을 수소도시계획 이런 걸로 바꾸는 검토의견이 90%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검토자료 할 때는 약간 실제적인 내용 위주로만, 조금 빼 주시고 용어 정리하는 것은 따로 해야 이게 두께에 따른 부담감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불필요한 내용이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서범수 위원 저도 잠시만……

○소위원장 김정재 서범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산자위에서 하는 수소법 있지요? 이거하고 본질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그것만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수소도시법은 수소의 생산이라든지 또는 이동,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에 어떤 것을 넣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적용이 된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법 같은 경우는 수소의 주로 생산이라든지 수소 관련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산업적인 측면에 있는 반면에 이것을 도시 쪽에 적용하려면 도시 인프라 중에서 수소의 생산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수소의 이동은 수소의 배관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지 또 수소의 활용과 관련한 부분, 예를 들면 각종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에 수소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촉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좀 더 특화해서 적용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오섭 위원 하나만,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길래……

○소위원장 김정재 조오섭 위원님.

○조오섭 위원 다음에 자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냐 하면 수소도시 관련되어서 정부 내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위탁을 하는 게 좋은지 그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홍기원 의원님 안하고 정부 안하고 가장 큰 차이가 그 차이인데 그 장단점 비교표를 주시면 논의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법안 논의를 다음에 하는 걸 기정사실화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 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민철	김병욱	김수홍	김정재
김학용	김희국	서범수	심상정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수 석 전 문 위 원 송 병 철

입 법 심 의 관 김 승 목

국토교통부

제 1 차 관 이 원 재

국 토 도 시 설 장 문 성 요

주 택 토 지 실 장 권 혁 진

기술안전정책관 이 상 일

공 공 수 택 본 부 유 혜 령
도심주택공급촉진과장

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최 이 라

차 장 외 문 국